

행정안전부 전문임기제 공무원 경력경쟁채용 공고

행정안전부에서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 및 제47조에 따라 우수 인재의 공직유치를 위한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6년 7월 27일
행정안전부장관

1 임용예정인원 (1개 직위, 총 1명)

지원코드	임용예정직급/분야	선발예정인원	채용기간*	근무예정부서(근무지)
A	전문임기제 나급/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지원	1명	임용일로부터 '28.4.27.까지	자치혁신실 사회연대경제지원과 (세종특별자치시)

* 채용된 후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채용기간 연장 가능

2 임용예정직무

지원코드	채용분야	임용예정직급	담당 업무
A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지원	전문임기제 나급	○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관협력 체계 구축 및 확산 사업 추진 ○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간지원조직 협력 ○ 사회연대경제 판로 확대 지원 및 신규사업 발굴·추진 ○ 상기 업무와 관련된 대외 협력 등

※ 임용예정직위 관련 자세한 내용은 '직무기술서'(붙임2) 참조

3 근거 법령

-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임용규칙,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 공무원 인사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등

4 응시 자격

가. 공통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응시 결격사유 및 응시 자격 정지 등 관련 세부 규정은 "붙임1" 참조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제2항에 따라 외국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응시하는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18세 이상(2008.12.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최종시험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소집해제) 예정자 포함

나. 응시자격요건 [최종시험(면접시험) 예정일(2026.9.8.) 기준]

※ 학위 요건(학위 취득 후 일정 경력 요구 시 제외)의 경우 학위 취득 판단기준일: 임용예정일(2026.9.30.) 기준

채용분야	직위별 요건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지원 (A)	▶ 관련분야 경력: 사회연대경제 조직(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셜벤처 등) 및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에서 사회연대경제 분야에 근무한 경력 ※ 학위취득에 소요되는 대학조교 경력 등 학위과정 경력 제외	
	경력 요건	※ '경력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최종 관련 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 되지 않아야 함 . 다만, 중증장애인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는 5년,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을 채용하는 경우는 10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 ①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민간경력이 있는 사람 (민간경력) ② 9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민간경력이 있는 사람(민간경력) ③ 6급 이상 또는 6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공무원 경력이 있는 사람(공무원경력)
	▶ 관련분야 학위: 정치학, 행정학, 사회학, 경영학, 경제학 등 ▶ 관련분야 경력: 사회연대경제 조직(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셜벤처 등) 및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에서 사회연대경제 분야에 근무한 경력 ※ 학위취득에 소요되는 대학조교 경력 등 학위과정 경력 제외	
	학위 요건	①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②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③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응시자격요건 고려사항]

○ 기본사항

- '응시자격요건(경력, 학위)에 기재된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면 응시 가능
 - ※ 경력, 학위 요건 중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요건을 반드시 1개 선택하여 응시
예) 경력1✓ / 경력2 / 경력3 / 학위1 / 학위2 / 학위3 → 경력, 학위 요건을 각각 선택하지 않도록 유의
 - ※ 응시자격요건 중복 선택, 미선택, 착오 선택 등으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은 **최종시험(면접) 예정일(2698 예정) 기준**으로 판단함
-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학위 소지여부는 **임용 예정일('26.9.30.예정) 기준**으로 판단함
- **(경력/학위) 응시자격 ①, ②, ③ 선택에 따라 우대요건으로 인정되는 경력의 기간이 달라지므로 응시자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요건을 신중히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 학위①의 경우, '26.9.30까지 학위를 소지하여야 하고, 학위②·③은 '26.9.8.까지 학위 취득 후 관련 근무경력에 해당하는 경력기간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공무원 경력의 상당 계급은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9], 공무원임용규칙 [별표1],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별표1] 등 관련 법령을 준용함

○ 경력의 범위

- 응시자격요건 '경력'의 경우, **경력 계산 시 공무원 경력과 민간경력을 합산할 수 없음**
 - ※ 예: '공무원(임용예정계급상당) 경력 2년'과 '민간경력 1년'을 합산하여 '관련분야 경력 3년'으로 인정되지 않음
- '경력'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최종 관련경력을 기준으로 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중증장애인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는 5년,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의 경우는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 '경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외국법인 포함) 및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 ▲국제기구 또는 국제단체에 소속되어 수행한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직무분야 경력을 의미함
 - ※ 예: '공무원(임용예정계급상당) 경력 2년'과 '민간경력 1년'을 합산하여 '관련분야
- '경력'에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을 완료하여 개인사업자로서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포함되며, 사업자 등록증명 및 해당 기간 매출 소득액과 포트폴리오 등 실제

업무를 수행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 서류전형 심의회 위원
판단을 거쳐 일부 범위의 경력을 인정할 수 있음

- 경력증명서 제출 건에 한해 인정하고,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
되어 있어야 하며, **경력사항이 불명확할 경우 서류전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담당업무는 관련 직무분야와의 연관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기재

* 경력증명서의 담당업무 내용이 모호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채용분야 직무와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별도의 증빙서류(예-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를 첨부하여야 함

- **기관의 폐업으로 경력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서류(예-근로계약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로 보완 가능하며, 이때
검증을 위해 **‘폐업사실확인서’, ‘4대보험 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 소득금액
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 대학 조교 경력과 학위 취득에 소요되는 학위과정 경력은 제외하되, 국·공립대학
및 사립대학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경력은 포함

- 동일 기간에 경력이 중복될 경우 유리한 경력 1개만 인정(근무기간이 긴 경력)함

- 경력기간은 통상근로(전임근무)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단시간 근무(시간제 근무)의
경우 기준(주당 40시간 근무)에 비례하여 산출한 경력을 인정

※ 단시간 근무(시간제 근무) 경력 산정 방법(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제4항)

- 전임 근무 : 경력의 전부 인정
- 시간제 근무 :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의 일부 인정

* [예] 4년간 주 20시간 시간제 근무 : 2년 인정

-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할 경우 : 심의회에서 경력 인정 범위를 결정

○ 학위의 범위

- ‘학위’ 요건의 ‘관련분야’는 학위논문 또는 전공분야를 기준으로 함
- 학위 취득 예정자의 경우 원서접수 시 ‘학위취득(졸업)예정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학위취득증명서(졸업증명서)’를 임용예정일(2026.9.30.)까지 제출하여야 함

※ 제출기한 내에 ‘학위취득증명서(졸업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합격 취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다. 우대요건 등 [원서접수 마감일(2026.8.6.) 기준]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지원 (A)	○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 관련분야 근무경력(1년이상 5년의 범위 차등우대) ○ '21.1.1. 이후 정부·공공기관 상훈·표창 실적(훈격별·건별 차등 우대)
-------------------------	--

[우대요건 등 고려사항]

○ 기본사항

-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원서접수 마감일(2026.8.6.)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

○ 우대요건 관련

①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의 관련분야 근무 경력(1년이상~5년의 범위 차등우대)

- 응시자격에 필요한 경력을 제외한 관련 경력(공무원경력, 민간경력 구분없이 모두 반영)
- 응시자격요건의 경력 판단기준과 동일(단,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 '응시자격요건으로 활용된 경력' 및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전 경력'에 대해서는 우대하지 않음

→ 예시1) 학위 ①번으로 지원 시, 임용예정 직무분야에 해당하는 박사학위 취득일 이후 경력만 우대요건 인정 가능

→ 예시2) 경력 ①번으로 지원 시, 학사학위 취득 이후 + 6년의 경력(임용예정 직무분야의 민간경력) 이후의 경력에 한하여 우대요건 인정 가능(우대요건은 민간, 공무원 모두 인정)

② 정부·공공기관 상훈·표창(훈격별·건별 차등우대)

- '21.1.1. 이후 수여 받은 기관장 명의의 표창장에 한하며, 개인 성명이 기재된 상훈에 한정(단체 제외)

- 중앙행정기관 : 차관급 이상(소속기관 포함)
- 상훈범위 : 훈·포장, 대통령·국무총리 표창, 장·차관 표창, 소속기관·공공기관장 표창·상장 등
-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법에 의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시, 군, 구
- 공공기관 범위 :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alio.go.kr)에서 지정된 공공기관

※ 임용예정직위 관련 자세한 내용은 '직무기술서'(붙임2) 참조

응시자격요건 지원 시 작성 요령(예시)

○ 지원자의 학위 및 근무경력

- 경영학 석사: 2020.1.1. / 민간경력: 2018.1.1.~2020.12.31./ 공무원경력: 2021.1.1.~2026.현재
 ※ 다만, 지원자의 경력 및 학위가 서류전형심사위원회에서 논의를 통해 관련분야 등 인정되어야함

○ 지원자가 응시자격요건 중 경력요건①,②(민간경력)으로 지원 시

- 공고일 기준 최종 3년 경력이 공무원 경력이므로 민간경력으로 지원 시, 응시자격 요건 미충족으로 부적격

○ 지원자가 응시자격요건 중 경력요건③(공무원경력)으로 지원 시

- 공고일 기준 최종 3년 경력이 공무원 경력이므로, 응시자격요건 충족이며 응시자격요건 충족이후의 직무분야 근무경력은 우대요건으로 인정

○ 지원자가 응시자격요건 중 학위요건②으로 지원 시

- 석사 학위 취득(2020.1.1.) 후 2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경우, 응시자격요건 충족이며, 응시자격요건 충족이후의 직무분야 근무경력은 우대요건으로 인정
 ※ 응시자격요건으로 지원한 학위(석사) 취득(2020.1.1.) 이후 경력에 대해서만 인정
 ※ 학위요건의 근무경력은 공무원경력, 민간경력 구분 없이 모두 반영

5 시험 방법

가. 서류전형

- 임용예정 직위별로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서류전형 기준 관련 자세한 사항은 붙임2 직무기술서 참고
- 단, 응시인원이 임용예정 직위별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를 초과할 경우,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
 ※ 동점자 발생으로 서류전형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한 경우,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처리

[서류전형 기준]

-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 담당예정업무와의 직무 연관성
- 우대요건(직무기술서 참고)
 ※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

응시인원	서류전형 합격인원
선발예정인원 5배수 초과~20배수 미만	선발예정인원 5배수
선발예정인원 20배수 이상	선발예정인원 7배수

나.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평가요소:** ① 소통·공감, ② 헌신·열정, ③ 창의·혁신, ④ 윤리·책임, ⑤ 직무전문성
 - **평가방식:** 개별면접으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을 토대로 질의·응답
- **최종합격자 결정:**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 및 응시자 제출서류의 진위 검증, 자기 성과 기술서 등을 종합하여 최종합격자 결정 (공무원 인사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제10조의2)
 - * 불합격 기준: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

6 시험 일정

구분	시험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일정	'26.7.27.(월) ~'26.8.6.(목)	'26.8.4.(화) ~'26.8.6.(목)	'26.8.28.(금)	'26.9.8.(목)	'26.9.18.(금)

- 본 시험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상황,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면접시간 및 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시 발표 및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별도 개별통보 예정
- 시험장소 공고,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최종면접 합격자 명단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 나라일터(<http://www.gojobs.go.k>) 게시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으로 임용되지 못하거나, 최종합격자가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직하여 결원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7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안내

가. 접수일시 및 방법

- 접수일시 및 시간: 2026.8.4.(화) ~ 8.6.(목) 까지
- 원서접수 및 제출방법: 등기우편 접수
 - ※ 겹봉투는 마지막 페이지 서식(봉투표지 양식) 활용
 - ※ 등기우편 접수는 접수 마감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하며, 택배 및 퀵서비스 등으로는 접수하지 않음
- 등기접수증을 채용담당자(moisinsa@korea.kr) 메일(제목: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지원 분야 채용시험 등기접수증, "응시생 성명")로 반드시 송부(접수 누락 방지)
- 등기우편 접수 주소: 우(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1207호 행정안전부 인사기획관실 채용담당자 앞
 - ※ 제출서류는 번호순서대로 정리한 후, 제본편철하지 말고 클립 혹은 집게 1개로 고정하여 제출, 단면인쇄(스테이플러 사용금지), 모아찍기하지 않음
 -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의 경우 반드시 공증된 한글번역본 첨부
 - ※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전까지 휴대폰 SMS로 개별통보 예정

나. 제출서류 "붙임3" 참조

다. 유의사항

-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임용예정직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필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서류전형에서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주민등록초본, 학위증명서 등)
- 응시자가 접수기간 중에 또는 접수마감일 다음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을 반환하여 드립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 대상자 제외)가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 청구시 관련서류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단, 원본 반환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기간 보관됩니다.
 - ※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안내사항,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경력확인을 위해 추후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4대 보험 자격 득실 이력 확인서(예: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내역서 등) 중 1종 및 근무 기간에 대한 소득금액 증명 등을 제출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8 채용기간 및 보수 관련 사항

- 임용 예정일: '26.9.30. 예정(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채용기간: 임용일로부터 '28.4.27.까지
※ 채용된 후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채용기간 연장 가능
- 보수: 공무원보수규정 등 보수 관련 규정에 따라 정함
 - 채용직위 연봉 한계액

구 분	2026년도 전문임기제 나급 연봉한계액 (단위: 천원)	
	상한액	하한액
전문임기제 나급	86,606	57,708

- 연봉액은 경력 등을 고려하여 보수 관련 규정에 따라 결정하며, 상기 연봉액 이외에도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등 일정 연봉 외 급여 지급
※ 고용보험 임의가입 시기 안내 : 임기제 공무원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동 기간이 지났을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음

9 안내 및 참고사항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시험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허위사실 기재, 증명서 위조, 부정행위 공모 및 청탁

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84조의2,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장, 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 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공무원임용령 제13조의2의 임용추천의 유예는 본 시험 합격자에게는 준용되지 않습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사(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공무원으로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 까지 최초공고 매체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임기제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전보가 허용되지 않으나, 공무원임용령 제45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보될 수 있습니다.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3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의2에 따라 누구든지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시험에 개입하거나 채용시험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인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행위로 인하여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의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확인된 피해자를 추가로 합격시키거나 시험의 응시기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기관 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관련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서류*로 보완하여야 합니다.

* ① 관련분야 근무경력 증빙 자료(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 내역 등), ② 폐업사실증명서, ③ 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 ④ 소득금액증명서 → ①, ②, ③, ④ 모두 제출해야 함

참고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 증명서 발급 방법(hometax)

①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아는 경우 :

- 국세청 홈택스 - 증명·등록·신청 - 사실확인 후 발급 증명 - 폐업자에 대한 업종등의 정보내역

The screenshot shows the HomeTax portal interface. On the left sidebar, '증명·등록·신청' is highlighted. In the main content area, under '민원증명', the path '증명·등록·신청' > '사실확인 후 발급 증명' > '폐업자에 대한 업종등의 정보내역' is indicated with red boxes and arrows. The right sidebar shows various other service categories like '세금신고', '납부·고지·환급', etc.

②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 :

- 국세청 홈택스 - 증명·등록·신청 - 즉시발급증명 - 소득금액증명 - 근로자소득용 발급(발급기한 설정) → 폐업회사 사업자 등록번호 확인 → 이하 과정은 ①과 동일

-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 절차 관련 사항: 행정안전부 인사기획관실(044-205-1392)

※ 직무 관련사항: 행정안전부 사회연대경제지원과(044-205-3212)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부칙 제2조(결격사유 및 당연퇴직에 관한 적용례)】 ① 제33조제6호의4 및 제69조 제1호(제33조제6호의4에 관한 개정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5857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19년 4월 17일 이후 저지른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거나 징계로 파면·해임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5조(응시 결격사유 등)】

- ①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② 제1항의 응시 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이하 "최종시험예정일"이라 한다)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비다수인대상 채용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관한 조치)】

-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 2.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 5. 병역, 가점, 영어능력검정시험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 6. 제5조제4항에 따른 체력을 실기의 방법으로 검정하는 실기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 7.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붙임 2

임용예정직위 직무기술서

코드번호	채용 분야	임용예정직급	선발예정인원	근무예정부서(근무지)
A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지원	전문임기제 나급	1명	자치혁신실 사회연대경제지원과(세종)
주요 업무		○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관협력 체계 구축 및 확산 사업 추진 ○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간지원조직 협력 ○ 사회연대경제 판로 확대 지원 및 신규사업 발굴·추진 ○ 상기 업무와 관련된 대외 협력 등		
필요 역량		○ 사회연대경제관련 기획 분석력, 집행관리능력, 전문성, 대외소통, 조정능력 ○ 공직윤리(공정성, 청렴성), 공직의식(책임감, 사명감), 고객지향 마인드		
필요 지식		○ 정책·행정 전반, 국가전략, 갈등관리·이해조정 및 대안 발굴 ○ 사회연대경제에 대한 정책수요자와의 소통·협력방안 등		
응시 자격 요건	아래 응시요건(경력①, 경력②, 경력③, 학위①, 학위②, 학위③) 중 1개를 선택하여 지원(중복선택 불가)			
	경력	▶ 관련분야 경력: 사회연대경제 조직(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셜벤처 등) 및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에서 사회연대경제 분야에 근무한 경력 ※ 학위취득에 소요되는 대학조교 경력 등 학위과정 경력 제외		
		※ '경력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최종 관련 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 되지 않아야 함. 다만, 중증장애인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는 5년,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을 채용하는 경우는 10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 ①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민간경력이 있는 사람(민간경력) ② 9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민간경력이 있는 사람(민간경력) ③ 6급 이상 또는 6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공무원 경력이 있는 사람(공무원경력)		
학위	▶ 관련분야 학위: 정치학, 행정학, 사회학, 경영학, 경제학 등 ▶ 관련분야 경력: 사회연대경제 조직(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셜벤처 등) 및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에서 사회연대경제 분야에 근무한 경력 ※ 학위취득에 소요되는 대학조교 경력 등 학위과정 경력 제외			
	①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②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③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우대요건		○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 관련분야 근무경력(1년~5년의 범위 차등우대) ○ 2021.1.1. 이후 정부·공공기관 표창·상훈 실적(훈격별·건별 차등 우대)		
※ "응시요건은 (경력의 경우) 최종시험예정일까지, (학위의 경우) 임용예정일까지 충족하여야 하고, "우대요건"은 원서접수마감일까지 충족하여야 함				

응시원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할 서류

(외국어로 발급된 증명서일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함께 첨부)

※ 제출서류는 상기 번호 순서대로 정리한 후, 클립 혹은 집게 1개로 고정하여 제출 (스테플러 사용금지)

구분	내용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별지서식 제1호)	○ 응시자가 제출하는 서류 목록을 체크하고 이하 제출서류 맨 앞에 합철하여 제출(이하 제출서류 순서대로 배치)
1. 응시원서 1부 (별지서식 제2호)	○ 응시수수료 - 전문임기제 나급: 10,000원 상당 정부수입인지 제출 - 가까운 우체국, 전자수입인지 사이트 (www.e-revenuestamp.or.kr) 등을 통해 발급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를 면제하오니 해당자는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제출 ○ 상단 오른쪽 자필서명하여 제출
2. 이력서 1부 (별지서식 제3호)	○ 별지서식 제3호 작성 -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사항 중 본인에게 해당하는 사항만 작성
3. 자기소개서 1부 (별지서식 제4호)	○ A4 2매 이내로 작성
4.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서식 제5호)	○ 별도 양식 없으며 A4 요약서 1매 + A4 3매로 작성 (총 4매 이내)
5. 자기 성과 기술서 1부 (별지서식 제6호)	○ A4 2매 이내로 작성

구분	내용
6.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별지서식 제7호)	○ 자필 서명 필수
7. 개인정보 제공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각 1부 (별지서식 제8호)	○ 자필 서명 필수
8. 주민등록초본 1부	○ 남성의 경우 병역관련 사항 이 기재되도록 발급
9. 대학교 이상의 졸업증명서(학위증) 사본 1부 ☞ 전형위원 제척·기피, 응시요건 확인 등을 위해 활용되며, 전형위원에게 학교명 등이 제공되지 않음	○ 응시자격요건 해당자 필수 제출(전공분야 표시) - 학사 이상 졸업증명서(학위증) 사본 모두 제출 ※ 응시요건 확인, 각 전형위원 선정 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 이해관계를 배제하기 위함 ※ 추후 임용예정일(2026.9.30.)까지 학위취득증명서 별도 제출 ○ 석·박사학위 소지자의 경우 학위논문 요약서 1부 필수 제출 <별지서식 제9호> - 논문의 표지 및 목차, 서론 사본 각 1부(논문명, 지도교수명, 학위자명 등 명시) ○ 해외 학위의 경우 아포스티유 혹은 영사 확인 필요 ※ 학위 사본 제출 후 아포스티유 혹은 영사 확인은 면접일에 지참 가능
10. 성적증명서	○ 학위 응시요건 지원자 필수 제출 ※ 이수 과목에 대한 정보를 통해 필요 지식을 갖추었는지 판단하기 위함 ○ 학사 이상 전체 성적증명서를 포함하며 성적은 가리고 제출할 것

구분	내용
11. 경력(재직)증명서 1부 (별지서식 제10호)	○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요건 해당자 필수 제출 ○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담당업무직급(위)가 정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불명확한 경우 불인정 될 수 있음에 유의 ○ 경력기간은 주당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하며, 시간제 근무 경력인 경우에는 기준에 비례하여 산출한 경력을 인정 ○ 채용분야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경력으로 인정 받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경력증명서의 담당분야 내용이 모호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채용분야 직무와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별도의 증빙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를 첨부하여야 함 ○ 기관폐업 등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경력증명서 외 다른 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로 보완 가능 ※ 보완서류 외 '폐업사실확인서'와 함께 '4대보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 및 '소득금액증명서' 을 추가로 필수 제출하여야 함 ○ 상기 경력 증명을 위하여 필요 시 [별지서식 제10호] 활용 ○ 증명서 발급확인자 성명, 연락처 및 E-mail 반드시 기재 (미포함시 하단에 별도 기재) ○ 외국기관 발급 증명서는 반드시 공증 번역된 요약본 첨부 ○ 증명서류 미제출 및 미비(담당업무 미기재)한 경우와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해당 경력이 불인정될 수 있음
12. 상훈·표창 증빙자료 사본 각 1부	○ 우대요건 해당자에 한함 ○ 정부,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여받은 상훈·표창 ○ 주최기관 또는 수여기관, 수상자, 공적명 등이 기입된 표창장 사본 첨부
13. 기타 증빙서류	○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에 언급된 사항으로 기타 증빙서류 일체를 의미함 ※ 직무분야와 무관한 자격증 또는 단순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자격증(예: 운전면허, 한자 등)은 제출하지 말 것 (제출 시 심사 이전 제외 처리함)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응시번호	응시직급 (분야/코드)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 응시자 미기재	전문임기제 나급	홍길동	1990. 1. 1.	010-1234-5678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지원 / A			
응시자격요건	☐ 경력① ☐ 경력② ☐ 경력③ ☐ 학위① ☐ 학위② ☐ 학위③ ※ 해당요건 반드시 1가지만 체크(V)			

※ 응시자격요건 선택 시, '응시자 체크리스트' 및 '응시자격요건 고려사항' 반드시 확인 후 선택

☐ 제출 서류에 ✓ 표시 후 **아래의 순서대로** 집계 또는 클립으로 편철

※ 모든 서류에 스테이플러 사용 금지

목록	제출 여부
1. 응시원서 1부(응시자 전원 필수 제출, 정부수입인지 포함)	☐ 제출 ☐ 미제출 정부수입인지 첨부 여부 ☐ 제출 ☐ 미제출
2. 이력서 1부(응시자 전원 필수 제출)	☐ 제출 ☐ 미제출
3. 자기소개서 1부(응시자 전원 필수 제출)	☐ 제출 ☐ 미제출
4. 직무수행계획서 1부(응시자 전원 필수 제출)	☐ 제출 ☐ 미제출
5. 자기 성과 기술서 1부(응시자 필수 제출)	☐ 제출 ☐ 미제출
6.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응시자 전원 필수 제출)	☐ 제출 ☐ 미제출
7.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응시자 전원 필수 제출)	☐ 제출 ☐ 미제출
8. 주민등록초본 1부(응시자 전원 필수 제출 / 남성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 필수)	☐ 제출 ☐ 미제출
9. 학사 이상 졸업증명서(부)(해당자에 한함)	☐ 제출 ☐ 미제출
9-1. 석사 및 박사학위 증명서(부)(해당자에 한함)	☐ 제출 ☐ 미제출
9-2. 학위논문 요약서 및 사본(학위논문 인준서, 논문목차, 논문요약본 등)(부)(해당자에 한함)	☐ 제출 ☐ 미제출
10. 성적증명서(부)(해당자에 한함)	☐ 제출 ☐ 미제출
11.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부)(해당자에 한함) ※ 담당업무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력(재직)증명서	☐ 제출 ☐ 미제출
12. 표창(상훈) 증빙자료 사본 (부)(해당자에 한함)	☐ 제출 ☐ 미제출
13. 기타 증빙서류(부)(해당자에 한함)	☐ 제출 ☐ 미제출

경력경쟁채용시험 응시자 체크리스트(참고사항)

- ◆ 일부 응시자가 '응시자격요건'을 잘못 선택하여 탈락하는 일이 간혹 발생했습니다. 모든 응시자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본인에게 맞는 '응시자격요건'을 선택해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A. 이 자료에서 '관련분야 경력' 및 관련분야 학위는 다음을 뜻하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관련분야 학위:** 정치학, 행정학, 사회학, 경영학, 경제학 등
- ▶ **관련분야 경력:** 사회연대경제 조직(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셜벤처 등) 및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에서 사회연대경제 분야에 근무한 경력

B. 귀하가 선택하려는 '응시자격요건'은 무엇입니까? 다음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 ___ ① 경력 → C로 이동하세요.
- ___ ② 학위 → D로 이동하세요.

C. '경력' 요건으로 응시하려고 한다면,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귀하는 아래 중 어떤 항목으로 지원하십니까? 다음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 ___ ①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민간경력이 있는 사람
- ___ ② 9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민간경력이 있는 사람
- ___ ③ 6급 이상 또는 6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공무원 경력이 있는 사람

(2) 귀하가 C-(1)에서 선택한 근무경력의 시기는 언제입니까? 다음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 ___ ①. 지금도 재직하고 있다. → 지원할 수 있습니다.
- ___ ②. 퇴직 후 채용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3년 이내이다. → 지원할 수 있습니다.
- ___ ③. 퇴직 후 채용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3년 초과 10년 이내이고, 채용 공고일 기준으로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다. (민법상 미성년: 만19세) → 지원할 수 있습니다.
- ___ ④. 퇴직 후 채용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5년 이내이고, 중증장애인인이다 → 지원할 수 있습니다.
- ___ ⑤. 위의 ①부터 ④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 '경력'으로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3) 귀하의 '관련분야 실무경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담당업무, 근무기간, 주당근무시간이 기재되어 있고 직인이 날인된 '경력증명서'를 준비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필수)

※ '담당업무, 근무기간, 주당근무시간'이 누락되어 탈락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학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는 아래에 해당하는 분만 준비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 만약 C-(1) ① 요건으로 지원하신다면, '학위 졸업증명서'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만약 C-(2)의 다.에 해당하여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D. '학위' 요건으로 응시하려고 한다면,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귀하는 아래 중 어떤 항목으로 지원하시겠습니까? 다음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 학위 취득 전의 경력은 인정되지 않으며, 학위 취득 이후의 경력만 인정됩니다.

- ___ ①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___ ②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___ ③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2) 귀하가 D-(1)의 ① '관련분야 박사학위'로 지원한다면, 아래 자료를 준비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박사학위 졸업증명서, 졸업논문, 졸업논문요약서

※ 박사학위 취득 이후 관련분야 경력이 있는 분의 경우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포함되어 있고, 직인이 날인된 경력증명서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우대요건 해당자에 한함)

(2) 귀하가 D-(1)의 ②,③으로 지원한다면, 아래 자료를 준비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분야 학위증명서(필수) ※ 석사 이상: 졸업논문, 논문표지, 졸업논문요약서 등 제출 필요
 - 석사: 2년, 학사: 4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포함되어 있고, 직인이 날인된 경력증명서(필수)
- ※ '담당업무, 근무기간, 주당근무시간'이 누락되어 탈락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서식 제2호>

(앞 면)

응시원서(원본)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본인은 행정안전부 경력경쟁채용 선발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응시인

(서명 또는 인)

응시원서(원본)			
응시직급 및 분야		전문임기제 나급 /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지원(A)	
응시자격		☐ 경력① ☐ 경력② ☐ 경력③ ☐ 학위① ☐ 학위② ☐ 학위③	
※응시번호	※ 응시자 미기재	성 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복수국적 해당여부	
주 소	(우)		정부수입인지 붙이는 란
전자우편			
전 화 (휴대전화)			

응 시 표 ()시험			
응시직급 및 분야(코드)		전문임기제 나급 /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지원(A)	
응시자격		☐ 경력① ☐ 경력② ☐ 경력③ ☐ 학위① ☐ 학위② ☐ 학위③	
※응시번호	※ 응시자 미기재	성 명	(한글) (한자)

주 의 사 항

-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와 접수인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시험당일은 응시표, 주민등록증 등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시험장소에 집결하여야 합니다.

※보완사항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

(뒷 면)

응시원서 작성요령

1. 응시원서 작성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된다.
2. 『응시원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한다.

- ① 응시원서 상단의 (서명 또는 인)란에 **반드시 서명 또는 날인**
- ② 응시번호: 기재하지 말것
- ③ 응시분야(코드) 및 직급 : 공고문을 참고하여 응시하고자하는 분야·코드 및 직급 기재
※ 응시직급(직류) 및 응시분야(코드)를 반드시 작성
- ④ 응시자격요건: 응시자격요건 및 직무기술서를 참고하여 응시자격요건(학위)를 반드시 확인하고 체크
※ 응시자격요건 중복선택, 미 선택 등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선택 오류사항 예시>			
1. 중복선택 - 응시요건을 택1 하지 않고 2개 이상 선택한 경우			
응시자격요건	☒ 경력①	☐ 경력②	☐ 경력③
	☐ 학위①	☒ 학위②	☐ 학위③
2. 미 선택 - 응시요건을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은 경우			
응시자격요건	☐ 경력①	☐ 경력②	☐ 경력③
	☐ 학위①	☐ 학위②	☐ 학위③

- ⑤ 주소: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 ⑥ 성명·주민등록번호·전자우편·(휴대)전화: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 ⑦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복수국적자가 아닐 경우 '해당없음' 기재
- ⑧ 정부수입인지: 전문임기제 나급은 10,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우체국에서 구입)를 제출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으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 받을 경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 응시자가 선택한 응시자격요건으로만 심사하며, 응시자에게 유리할 수 있는 다른 자격요건으로 심사하지 않음. 응시자격요건 중복선택, 미선택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에게 있음

※ 응시원서에 기입한 응시자격 선택표시와 이력서에 기입된 응시자격 선택표시가 다를 경우, 이력서를 기준으로 심사

이력서 작성요령

『이력서』는 아래의 요령에 따라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 ① **응시번호**: 기재하지 않음
- ② **응시분야**: 응시하고자하는 지원코드 작성
- ③ **응시자격요건**: 응시하고자하는 지원코드의 응시자격 요건 중 선택
※ 응시자격요건 중복 선택, 미선택 등으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 ④ **응시자격**: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

경력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만 기재

ex) 학사학위 취득 후 6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민간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응시하는 자가 학사학위 취득 후 관련분야에서 8년의 경력이 있을 시,

- 가장 오래된 경력순으로 응시자격에 해당하는 6년의 경력은 '나.응시자격'의 경력란에 기입하고,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 2년의 경력은 '다.우대요건'의 경력란에 기재

- **담당예정업무와 관련된 경력 및 실적을 기재**
 - * 본인이 기재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니 증빙가능한 사실만 기재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상의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근무기관, 근무기간, 직위, 담당업무, 근무형태)
 - ※ 현재 근무중인 경력은 **최종시험(면접) 예정일**을 근무기간 종료일로 하되, 서류 제출 이후 퇴사·이직 등으로 경력요건 미충족시 최종합격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경력기간 중 휴직기간이 포함되었을 경우 휴직기간 및 사유를 별도 기재**
- 직위(급)는 재직기간 중에 있었던 모든 직위(급)를 나누어 기재
- 근무형태는 '전임'(통상근무자) 또는 '비전임'(단시간근무자)으로 표시하되, 비전임일 경우 주당 근무시간 표시, 시간제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경력의 일부를 인정할 수 있음
 - * 예시) 통상근무시간이 주40시간인 회사에서 4년간 주 20시간 시간제 근무한 경우 : 2년 인정
 - * 단, 학위 취득을 위한 조교 근무(연구)경력 불인정

학위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학위만 기재

- 전공·학위종류·취득(예정)일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 학사-석사-박사 학위 순으로 기재
- 학교명은 기재하지 않고,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학위를 기재(학위증명서에 기재된 전공과 동일하게 작성)
- 해외 학위의 경우 아포스티유 혹은 영사확인 필요(면접일 지참 가능)

⑤ **우대요건**: 해당자에 한하여 작성

경력 응시자격요건으로 제출한 경력 외 별도경력을 기재

- 담당예정업무와 관련된 경력 및 실적을 기재
- ※ 현재 근무중인 경력은 원서접수 마감일을 근무기간 종료일로 하되, 서류 제출 이후 퇴사·이직 등으로 경력요건 미충족시 최종합격에서 제외될 수 있음
- * 응시자격에 해당하는 경력과 동일한 방법으로 기재

상훈·표창 '2021. 1. 1.이후' 상훈·표창에 한함

- 상훈·표창명: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수여받은 상훈·표창명을 기재하고, 표창대상자 기재
- * 정부 범위: 중앙정부(차관급 이상의 기관장), 광역·기초자치단체
- * 공공기관 범위: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alio.go.kr)에서 지정된 공공기관
- 표창내용을 간략히 기재
- 수여기관: 수여한 기관명을 기재
- 주최기관 또는 수여기관, 수상자, 공적명 등이 기입된 표창장 사본 첨부

자기소개서

성명		응시직급 및 분야(코드)	
----	--	---------------	--

◎ 자기소개서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A4용지 2매 이내로 작성**

직무수행계획서

성명		응시직급 및 분야(코드)	
----	--	---------------	--

◎ 직무수행계획서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작성요령은 삭제 후 작성 요망

○ 작성요령

- 특별한 양식 없이 응시자가 자유롭게 기술하되, 서론(정책·사업의 동향 및 전망 포함), 정책(사업)목표, 추진전략, 수단, 방법, 추진일정 등이 포함되도록 작성함
- 분량은 요약서 A4 1매 + A4용지 3매(총 4매 이내)로 하고 한글을 사용하여 작성
- 보고서 매 장마다 쪽 번호를 부여
- 문서 마지막에 작성일자와 서명 포함

자기 성과 기술서

성명		응시직급 및 분야	
----	--	-----------	--

◎ 자기소개서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A4용지 2매 이내로 작성 (휴면명조 12p 가는 글씨, 줄간격 160%로 작성)

※ 작성요령 및 작성예시는 삭제 후 작성

1. 현재까지 귀하가 담당했던 업무에서의 성과를 구체적으로 작성
2. 정책추진의 여건 및 부여된 세부 과제, 당해 과제와 관련된 본인의 구체적인 역할과 행정적 조치, 본인의 역할과 조치로 인한 주요 성과 등을 작성

* 작성예시) ○○ 업무 추진('00.00.00~'00.00.00)

○ 정책추진의 여건 및 부여된 세부 과제

○ 당해 과제와 관련된 본인의 구체적인 역할과 행정적 조치

○ 본인의 역할과 조치로 인한 주요 성과

2026. . . 작 성 자 : (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본 기관에서는 공무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공무원 채용 및 관리
- (2) 개인정보 수집 항목(필수) :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병역사항, 응시자격요건에 따른 학력·경력·자격·면허사항, 4대 보험 자격 득실, 소득금액증명, 외국어성적논문·수상실적 등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사항
-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이용합니다.

개인정보 처리사유	개인정보 항목	수집 근거
채용심사를 위한 본인확인 및 심사자료	주민등록번호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3조

2.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공무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민감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1)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공무원 채용 및 관리
- (2) 민감정보 수집 항목 : **범죄경력정보**
- (3) 민감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민감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3. 복수국적자 경력사항 자격요건 확인 등을 위한 동의서 효력인정 및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시험실시기관은 응시요건 등 응시자가 제출한 증빙자료의 진위여부를 해당기관에 조회하여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자료 확인서 발급에 필요한 동의와 개인정보보호법 등에서 보호되고 있는 각종 개인정보 관련 자료를 동법 제15조 등에 따라 인사담당 업무관계자에게 제공 및 공개·활용하는데 필요한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을 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제공받는 자	(2) 제공목적	(3) 제공 항목	(4)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사무소)	공무원 채용 관리 (복수국적 조회)	복수국적 여부 조회에 필요한 사항	정보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
기타 개인정보 보유기관	공무원 채용 관리 (자격 확인)	자격증, 경력사항 학위 등 응시요건 충족 및 제출서류 진위여부 확인에 필요한 사항	정보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
인사혁신처	공무원 시험 응시자격 정지 여부 회신	성명, 주민등록번호*, 시험연도, 시험명, 응시제한기간, 관보게재일, 처분청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 (행정정보공동이용 증적 보관)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주민등록번호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3조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함을 인정하고, 이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6년 월 일

성명:

(서명)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학위논문요약서(석사·박사)

성명	직무분야	응시직급
학위개요	○ 논문제목 ■ 한글명 : ■ 영문명 : ○ 심사 년월일 : ○ 지도교수 :	
주요내용 요약		

I. 연구목적

1.
 - 가.
 - 1)
 - 가)
 - (1)
 - (가)

II. 연구내용

III. 연구결과의 활용도(구체적으로)

본 논문요약서의 기재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허위사실이 드러날 경우 모든 법적 책임을 본인이 지겠습니다.

2026. . .
응시자 : (인)

※ 박사 및 석사 학위 건별로 작성 / 주요내용 요약은 3페이지 이내로 작성
※ 논문 표지 및 목차, 서론 사본 각 1부 제출(논문명, 지도교수명, 학위자명 등 명시)

<별지서식 제10호>

경력(재직) 증명서

※ 경력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에 경력사항이 자세히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경력증명서 발급시스템 문제 등) 아래의 양식을 사용하여 제출

인적 사항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경력 사항	근무기간		업체명 (근무처)	직위 (직급)	담당업무 ①	근무형태 ②	비고																		
	부터	까지																							
	(예시) '12.6.30	'14.7.1	(주) 00	주임		주 30시간																			
상별 사항	포 상				징 계																				
	년월일	종 류	해당기관	년월일	종 류	해당기관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2026년 월 일 증명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인)				<table border="1"> <tr> <th colspan="2">발급자</th> </tr> <tr> <td>소속</td> <td></td> </tr> <tr> <td>직위</td> <td></td> </tr> <tr> <td>연락처</td> <td>※필수기재</td> </tr> <tr> <td>성명</td> <td>(인)</td> </tr> </table> <table border="1"> <tr> <th colspan="2">확인자</th> </tr> <tr> <td>소속</td> <td></td> </tr> <tr> <td>직위</td> <td></td> </tr> <tr> <td>성명</td> <td>(인)</td> </tr> </table>				발급자		소속		직위		연락처	※필수기재	성명	(인)	확인자		소속		직위		성명	(인)
발급자																									
소속																									
직위																									
연락처	※필수기재																								
성명	(인)																								
확인자																									
소속																									
직위																									
성명	(인)																								
① 담당업무: 수행업무를 구체적으로 기재 ② 근무형태: 주당 근무시간 반드시 기재 (예: 주 00시간) ③ 발급자(해당기관에서 증명서 발급업무를 담당하는 자) 연락처 필수기재 ④ 발급자 또는 확인자 가운데 반드시 1명 이상 인사담당자가 포함되어야 함																									

1. 공무원의 경우 경력(재직)증명서 발급 시, 인사부서에 요청하여 담당업무 기재 필요
2. 그 밖의 경우 경력(재직)증명서 발급 시, 인사부서에 담당업무 기재 된 경력증명서 발급 요청

<봉투표지 양식> ※ 봉투 겉면에 붙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보내는 사람(주소 및 성명)

응시분야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지원
응시직급 전문임기제 나급

연락처 : 휴대전화 등 ()

받는 사람

우)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1207호

행정안전부 인사기획관실

044-205-1392

채용담당자 앞

**[행정안전부 경력경쟁채용
응시원서 재증]**